[태국 ABS 관련 법제]

□ 개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2004.1.29)
나고야의정서	비당사국 (2012.1.31. 서명)
ABS 관련 법제도	○ **태국 내에서 연구 활동하는 외국인 연구자를 위한 허가규칙** (Regulations on the Permission for Foreign Researchers to Conduct Research in Thailand, B.E. 2550, 2007 시행) ○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생물다양성보전·이용 국가위원회 규칙** (National Committee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s Regulations on Criteria and Procedures for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BS Regulations), 2011.3.5 발효)

□ 소관기관

국가연락기관 (NFP)	**자연자원·환경정책부 생물다양성관리국** Biological Diversity Management Division Office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Email) somawan22@gmail.com, somawan@onep.go.th waraporn.b@onep.go.th, sawitree.b@onep.go.th (Tel) +66 2 265 6558
국가책임기관 (CNA)	현재 지정기관 없음
국가점검기관 (NCP)	현재 지정기관 없음

□ 사전통고승인(PIC)

[ABS 규칙]

○ **접근신청 절차**

-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규정이 별도 제정되지 않은 경우, 관할 정부기관은 생물다양성 보전·이용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자원에 대한 접근허가 신청 및 증거서류를 접수하고, ABS규칙의 절차에 따라 접근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음 (ABS규칙 제4조)
- 접근허가 신청을 접수한 정부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 증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수정 보완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ABS규칙 제5조)
- 지방정부의 관할 장소에서 생물자원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허가신청을 접수한 정부기관은, 승인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확인해야 함. 지방정부는 허가서 발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의무를 부담함 (ABS규칙 제6조)
- 허가신청을 접수한 정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검토함 (ABS규칙 제7조)

- 접근허가서 및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정부기관이 신규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허가받은 자가 합의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기관은 허가기간 내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또한 허가 승인기관과 허가받은 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 취소가 가능함 (ABS규칙 제10조)

[외국인의 연구허가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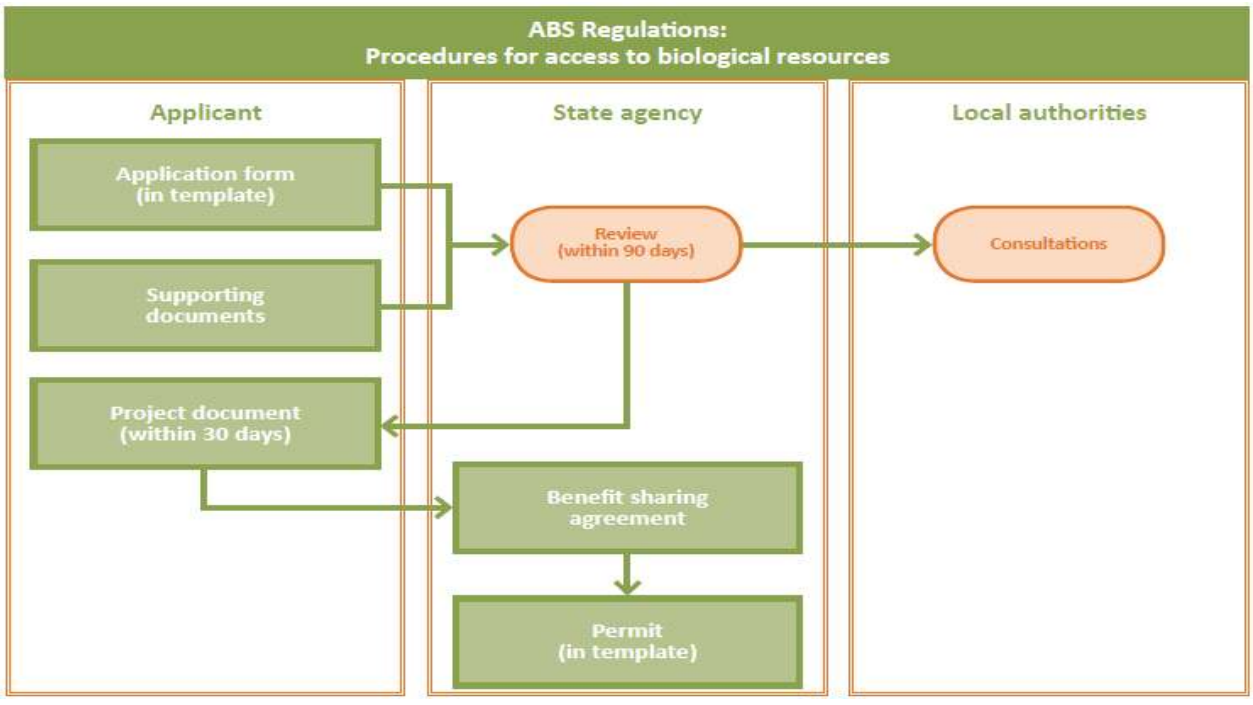
○ **적용대상 연구활동** (연구허가규칙 제7조)

• 연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가져야 함

- 각 당사자 또는 참여자에게 유익하고, 연구자 혼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것
- 외국인 연구자의 학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할 것
- 외국정부 또는 기관 및 정부부처와 태국 기관간의 협력 또는 지원사업을 구성할 것

○ **적용대상 연구자** (연구허가규칙 제8조 및 제10조)

- **유형 1** : 태국 정부와의 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기초하여, 태국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 외국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
- **유형 2** : 태국 정부와 외국기관간의 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태국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 각 기관이 서명한 MOU를 포함하는 증명서가 요구됨. 외국인이 태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학술기관과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서가 필요함. 외국인이 MOU에서 정하는 일부 또는 모든 비용을 부담
- **유형 3** :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태국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 외국인은 태국 기관이 해당 비용부담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태국인에 대한 보수, 실습비 및 연구보조자의 임금 등을 포함하여 비용 전액을 부담
- **유형 4** : 위 3개의 유형에서 정한 것 외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 연구자. 비용부담은 유형 3과 동일



• 외국인이 참여하는 연구는, 태국인 연구자 또는 컨설턴트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함. 외국인 연구자가 개인으로 연구 수행을 신청할 경우, 이 경우에는 국가학술조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 NRCT) 및 관련기관의 연구승인 결정이 있어야 함 (연구허가규칙 제9조)

○ **연구허가신청 및 예치금 납부** (연구허가규칙 제13조-제20조)

- 외국인 연구자는 허가규칙에 따라 NRCT에 연구수행을 위한 허가신청양식(NRCT-01)을 제출해야 함
- 유형 1의 외국인과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태국 기관은, 프로젝트 개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연구자에 관한 정보를 담은 N/1 양식을 NRCT에 제출해야 함.
- 유형 2, 3, 4의 외국인은, 연구 개시일 90일 전까지 연구수행을 위한 허가신청서와 추천서를 NRCT에 제출해야 함. 연구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연구 개시가 금지됨
- 외국인이 연구허가증을 수령한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에 양식 NRCT-02에 이를 기재하여 보고해야 함
- 외국인은 태국 도착 후 7일 이내 또는 허가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등록(NRCT-02 양식), ID카드 수령, 태국 내 협력자 또는 협력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수령을 위해 NRCT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보고하여야 함
- 유형 3 및 4의 외국인은, 완성된 연구보고서의 제출을 담보하기 위해, 한 프로젝트당 10,000바트(약 36만원)의 예치금을 지불해야 함. 동 예치금은 NRCT가 완성된 최종보고서를 수령하면 연구자에게 반환됨

○ **태국에서의 연구 수행** (연구허가규칙 제21조-제23조)

- 외국인 연구자는 연구계획에 기술한 사항 이외의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NRCT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 또는 현장을 관할하는 국내기관의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함
- 연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NRCT의 양식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예정일보다 최소 60일 이전에 NRCT에 통지해야 함
- 연구 수행 중 연구자는 NRCT가 정한 일정에 따라 양식 NRCT-03에 동의하고, NRCT 및 협력하는 태국인 연구자에게 영어 또는 태국어로 진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허가 연장 신청** (연구허가규칙 제24조-제25조)

- 프로젝트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허가 종료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연구 연장허가신청양식(NRCT-04)를 NRCT에 제출해야 함
- 연구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NRCT-04 양식과 함께 영어 또는 태국어로 작성된 개요 보고서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제출해야 함

○ **연구의 완료** (연구허가규칙 제26조-제32조)

- 연구가 완료되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식 NRCT-05와 함께 영어 또는 태국어로 연구활동 개요를 NRCT 및 태국 협력자에게 제출함
-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연구 자료는, 연구활동 개요와 함께 NRCT 및 태국 관련기관에 제출함
- 외국인이 연구시료의 분석을 계속하기 위해 국외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자는 NRCT 또는 관련 태국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은 태국에서의 연구활동 종료일 1년 이내에 양식 NRCT-06의 지침에 따라, 영어 또는 태국어로 완성된 보고서 사본 CD를 NRCT에 제출해야 함. 연구허가 연장을 신청한 경우,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태국 내 연구활동 종료 후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과거에 태국 내 연구활동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신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직전에 수행한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를 NRCT에 제출해야 함.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이 태국 내에서 복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
- 외국인은 태국에서의 연구와 관련된 모든 연구논문을, 출간 후 3개월 이내에 인쇄본과 CD로 제출해야 함
- 본 연구허가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된 연구프로젝트에 정한 사항 이외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NRCT가 관련 국내기관과 조정하여 연구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상호합의조건(MAT)

○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 정부기관이 접근허가서 발행을 확인한 경우, 해당기관은 신청인이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연구계획서 최종본을 송부하도록 통지해야 함
- 이후 정부기관은 신청인과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국가위원회의 양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행하며, 합의서와 허가서의 사본을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ABS규칙 제8조)
-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이 태국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에 따른 학술적 연구, 실험용 등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 신청인은 해당 사유로 생물자원에 접근한다는 교육기관의 증명서를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또한 승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서를 수령한 후에 제8조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음 (ABS규칙 제9조)
- 제8조의 승인기관과 허가받은 자 사이의 합의서에는, 정부기관, 허가받은 자, 지역사회 등이 수령하게 되는 지불금, 권리, 이익, 법정세금, 기타 비용 등 생물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에 관한 합의사항을 명기해야 함 (ABS규칙 제11조)
-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인 경우**, 합의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ABS규칙 제12조)
 (1) 허가받은 자와 생물자원에 접근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의 상세정보 : 이름, 주소, 직업, 연령, 주된 거주지 등
 (2) 접근 예정 생물자원 : 가능한 생물자원의 종, 품종, 속, 과 등의 상세, 형태, 샘플 개수 등 포함. 샘플 수집이 필요한 경우, 필요 이상의 샘플 수집은 아니 되며, 법령과 규정에서 특정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함
 (3) 생물자원의 접근 예정 장소 및 기간
 (4) 접근을 승인한 정부기관이 해당 생물자원의 접근으로부터 취득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생물자원 접근자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접근 방법을 선택하며, 관계자 이외 생물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물자원에 접근하는 동안 데이터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와 승인기관에 생물자원의 데이터 및 출처에 대해 통지해야 함. 또한 접근기간 과정 및 그 이후에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결과의 보고의무를 역시 명기함

(6) 생물자원 접근자는, 접근으로부터 취득한 생물자원, 생물물질 또는 데이터에 대해, 합의서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
(7) 생물자원 접근자는, 자신이 허가를 취득한 생물자원 및 정보에 대해 관계자 외에 접근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
(8) 태국 국적의 연구자 및 과학자가 생물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
(9) 신규로 발견한 생물자원과 생물물질의 관리
(10) 생물자원의 이용 및 합의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만 접근 승인기관으로부터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11) 허가받은 자가 합의서를 위반한 경우의 조치
(12) 태국 법령에 정한 사항
(13) 허가받은 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에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 자원에 대한 접근 목적이 추후에 상업적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상업적 접근에 관한 합의서를 본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과 재작성해야 한다는 점의 명기 필요

- **상업적 이용목적의 합의서에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ABS규칙 제13조)
(1) 자원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원 접근을 개시한 이후 허가서가 만료되기까지 기간 동안, 허가받은 자가 합의사항에 따라 생산물, 제품, 제조공정, 생물자원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 등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이익공유

○ **이익공유 합의서 작성 및 성과 보고**

- 접근을 승인한 정부기관과 허가받은 자는, 정부기관, 허가받은 자, 지역사회 등이 수령하게 되는 지불금, 권리, 이익, 법정세금, 기타 비용 등 생물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에 관한 합의사항을 정해야 함 (ABS규칙 제11조)
- 조사, 모니터링, 관리 및 결과 보고를 위해, 승인기관과 허가받은 자 사이에 최소 3개월에 1회의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에 대해 합의할 것
- 허가서가 만료되는 경우,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성과 보고에 관하여 합의해야 함 (ABS규칙 제14조)
- 승인기관은 허가받은 자가 합의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 모니터링 관리하고, 합의서에 정한 접근 및 이익공유의 진행상황을 국가위원회에 최소 6개월에 1회의 기간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음
- 허가서가 만료된 경우에도 접근 및 이익공유의 결과에 대해 국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ABS규칙 제15조)

□ 의무준수

○ 해당내용 없음

□ 벌칙/과태료

○ 해당내용 없음

□ 참고사항

참고사항	○ 태국 국가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 - https://foreignresearcher.nrct.go.th/index.php?lang=th&mod=forms&op=regulations_en)

본 자료는 한국ABS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www.abs.re.kr에서 제공되며,
해당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